

2026년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1 시험 일정

구 분	일 시	주 요 내 용
온 라 인 원서 접수	9. 22.(화) 10:00 ~ 9. 29.(화) 17:00	○ 온라인 접수만 실시(방문접수 불가) ※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 에서 학교명을 '독학'으로 검색하여 접수 ○ 원서 수정·취소·환불은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부속서류 제 출	9. 22.(화) ~10. 22.(목)	○ 응시자격에 따른 부속서류 및 제출방법은 p.6~10 참조 ※ 제출처: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9층 한국능력협회 독학학위제 담당자
수험표 출 력	10. 23.(금) 10:00	○ 독학학위제 또는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출력 ※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할 것 ※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불가'로 표시되며, 사유는 수험표에서 확인 가능
시험장소 공 고	10. 23.(금) 10:00	○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수험표]에서 확인
시 험 일	11. 1.(일)	○ 입·퇴실 등 세부 시간은 수험표에서 확인 ※ 1교시 응시자는 시작 20분 전 입실완료 ※ 2~3교시 응시자는 시작 15분 전 입실완료 ※ 수험표, 규정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흑청색 볼펜(p.10~11 참조)
합 격 자 발 표	11. 30.(월) 10:00	○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합격조회]에서 확인

※ 2026년 4과정 시험 부속서류 제출기관은 **한국능력협회**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2 시험과목 및 시간표

□ 1교시 입실시간: 08시 40분 완료

□ 과정합격 기준

가. 총점합격제 : 총점(600점)의 60% 이상 득점(360점) 시 합격(과목낙제 없음)

나. 과목별합격제 : 전 과목(교양2, 전공4)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

교시 분야	1 교 시	2 교 시		3 교 시
	09:00~10:40 (100분)	11:10~12:50 (100분)		14:00~15:40 (100분)
국 어 국문학	[국 어 국 사 외국어*] 중 택 2과목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중식) 12:50 ~ 13:40 (50분)	한국문학사 문학비평론
영 어 영문학		영미문학개관 영미소설		영어학개론 고급영어
심리학		임상심리학 소비자및광고심리학		심리학연구방법론 인지신경과학
경영학		재무관리 마케팅관리		회계학 인사조직론
법 학		민 법 헌 법		형 법 상 법
행정학	* 외국어를 선택할 경우	인사행정론 행정조직론		재무행정론 정책분석평가론
유 아 교육학	[실용영어 실용독일어 실용프랑스어 실용중국어 실용일본어] 중 택 1과목	유아교육론 유아발달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교수법
가정학		패션과의생활 소비자론		식이요법 주거관리
컴퓨터 공 학		알고리즘 통합컴퓨터시스템		통합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정 보 통신학		전자회로 정보통신시스템		네트워크및보안 멀티미디어통신
간호학		간호연구방법론 간호과정론	간호지도자론 간호윤리와법	

- 과목합격제를 선택하는 경우 기존에 합격한 일부 과목이 폐지되었더라도 새롭게 응시하는 과목과 합하여 전공 총 4과목과 교양 총 2과목을 합격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아래 변경 전 후의 과목은 동일과목이므로 중복 합격 인정 불가
 - 2020년 1교시 과목명 변경 [영어 → 실용영어], [독일어 → 실용독일어], [프랑스어 → 실용프랑스어], [중국어 → 실용중국어], [일본어 → 실용일본어]
 - 2022년, 심리학 전공의 과목명 변경 [임상및상담심리학 → 임상심리학]

□ 일부 전공 유의사항

폐지 전공(정보통신학) 유의사항

- 정보통신학 전공은 2022.06.29.자로 폐지되었으며,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에 대해서만 2026년까지 시험 응시 가능(독학학위제 홈페이지 '공지사항 397번' 참조)
- 응시자격 : 1~2과정 면제 요건을 충족한 3과정 합격자 또는 1~3과정 면제자
- 예시
 - 고졸자(1~2과정 면제요건 미충족) : 3과정 합격 후 4과정 시험 응시 불가
 - 고졸자이면서 무선설비기사 자격 소지자(1~3과정 면제요건 충족) : 정보통신학전공 4과정 시험 응시 가능

간호학 전공 유의사항

- 개설과정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만 개설
- 응시자격
 - 4년제 대학 간호학 전공(과)에서 3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 취득자
 -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불가)
- ※ 간호사 면허증만으로 응시자격이 될 수 없음(간호사 면허증 제출 불필요)

유아교육학 전공 유의사항

- 개설과정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만 개설
- 응시자격 : 1~2과정 면제 요건을 충족한 3과정 합격자 또는 1~3과정 면제자
- 유의사항
 - 유아교육학 전공은 1~2과정 시험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4과정 시험에 응시하려면 1~2과정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3과정 시험을 합격하거나 1~3과정 면제요건을 충족**해야함
 - ※ 1~2과정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과정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4과정 시험은 응시불가
- 예시
 - 고졸자(1~2과정 면제요건 미충족) : 3과정 합격 후 4과정 시험 응시 불가
 - 2년제 유아교육전공 졸업자(1~2과정 면제요건 충족) : 유아교육학 전공 3과정 시험 6과목 합격 시, 4과정 시험 응시 가능

구 분	응 시 자 격	면 제 요 건
4과정 응시 가능자	• 1~2과정 면제요건을 충족 후 3과정을 합격한 사람	• 1~2과정 면제 - 대학(교)의 동일전공(인정)학과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 동일전공(인정)학과에서 70학점 이상 인정 받은 사람 - 외국에서 동일전공으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2과정까지 면제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1~3과정 면제요건을 충족한 사람	• 1~3과정 면제 - 대학(교)의 동일전공 인정학과에서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3년제 전문대학 동일전공 인정학과를 졸업한 사람 ※ 졸업예정자 또는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응시 불가 - 학점은행제 동일전공(인정)학과에서 105학점 이상 (전공 28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 - 3과정까지 면제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국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국가시험 합격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따른 과정면제 내용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시험안내-시험면제' 와 '자료실-2026년도 독학학위 취득시험 응시요강(시험안내)' p.15~22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 1~3과정 시험의 전 과목을 합격하거나 면제받아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가목부터 마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학학위제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명(또는 동일전공 인정학과명)과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전공명이 일치**해야함

※ 동일전공 인정학과 현황은 시험요강 p.43 또는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학습정보> 동일전공인정학과 현황/신청]에서 확인 가능

- 가.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 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다.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 없음)
-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전공 28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마. 15년 이상의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외국학적 보유자

※ 유의사항

- 응시하고자 하는 독학학위제 전공과 수료한 전공이 동일전공 인정(학)과일 때 응시 가능
 예) 4년제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05학점 이수 → 심리학 4과정 응시 가능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5학점 이수 → 심리학 4과정 응시 불가

※ 응시자격 적용기준일(시험일로부터 4일 전) : 2026. 10. 28.(수)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응시자격 유형	제출 서류	원서접수 시 참고 사항
• 독학학위제 (1~3과정 시험 합격자)	없음	• 학적번호 조회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 35학점 + 2~3과정 합격자 - 70학점 + 3과정 합격자 - 105학점(전공28학점) 인정자	없음	• [학점은행제로 선택] ※ 응시자격 적용기준일(10.28.(수)) 기준 학점인정처리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응시불가
• 국가기술자격면허 취득	① 최종학력증명서 ② 자격 취득 확인서	• [국가기술 및 자격면허취득 선택
•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① 최종학력증명서 ② 공무원시험 합격증명서	• [공무원공채시험합격]으로 선택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① 최종학력증명서 ② 면제과정이수 확인서	• [과목면제과정이수]로 선택
• 4년제 대학교 - 졸업/3학년 이상 수료 - 105학점 이상 취득	참고사항 참조	• [대학교] 수료(졸업)자로 선택 • 아래 해당 증빙서류 중 1부 ① 졸업증명서 : 4년제 대학교 졸업자 ② 3학년 수료증명서 : 3학년 수료자 ③ 성적증명서 : 105학점 이상 취득자
•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수료자 및 졸업예정자 응시불가)	졸업증명서	• [대학교] 수료(졸업)자로 선택
• 외국학적보유자	별도 페이지 안내	• p.7 참조

□ 추가 서류 제출 대상

구분	추가 제출서류
•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 제공 대상자 (지체부자유, 시력 및 시야장애, 기타장애 등)	- p.8 참조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외국학적보유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최종학력			비 고
	고졸	대학 재학제적	대졸	
출입국사실증명서	○	○	○	출생일부터 조회하여 발급
초·중·고 전 과정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국내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와 이후 외국 학력 증빙서류
고등학교 학력인정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대학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수료증명서는 대학 담당자의 확인레터로 대체 가능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영어 외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	○	○	공증사무소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 인증한 서류 제출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외국학적에 대한 증빙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단, 원본 반환 요청 시, 담당자가 원본으로 자격심사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
- 외국학적 보유자가 국내 대학에 입학한 경우, 위 표의 제출서류를 국내 대학 성적(또는 재학, 제적, 휴학, 수료)증명서와 학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학력인정확인서는 해당 국가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해당 국가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응시자격 심사 담당자의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학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인정 불가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제공
중증 시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 대독 또는 점자문제지 제공 - 별도시험실 배정 - 과목당 시험 시간 1.5배 연장
경증 시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확대 또는 축소문제지 제공 - 필요시 별도시험실 배정 - 과목당 시험 시간 10분 연장 * 확대 독서기(개인 지참) 사용 희망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기타 뇌병변 등 운동장애	-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응시자 - 상지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응시자 - 손, 목, 눈 등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응시자	- 답안지 대필 가능 - 별도시험실 배정 - 과목당 시험 시간 10분 연장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응시자의 상황에 맞는 편의를 제공
- 시험시간 연장 운영 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단축 운영

4 응시원서 접수 및 부속서류 제출방법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가. 접수방법 :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 로그인 후 학교명을 '독학'으로 검색하여 원서 접수

나. 접수기간 : **2026. 9. 22.(화) 10:00 ~ 9. 29.(화) 17:00**

다. 응시료: 20,700원(수험료 18,000원, 접수 수수료 2,700원)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결제

※ 결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전공·응시과목 등 접수내역 확인**

라. 접수 유의사항

1) 원서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이후 추가 접수·수정·환불 불가**

※ 원서 접수 기간 내 환불 접수처: 진학어플라이 고객센터(1544-7715)

2) 첨부한 부속서류는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원서 저장 후 응시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최종 접수처리 됨**

4)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출한 부속서류 미비하거나 본인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6)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원서 접수 시 **[신체장애인 확인사항]**을 선택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p.8 참조)

7) 응시원서 작성 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 **부속서류 제출방법 : 아래 온·오프라인 제출방법(㉠, ㉡, ㉢) 중 택1**

온라인	㉠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 원서 접수 시, 스캔파일 첨부 ㉡ 스캔파일 메일 송부(메일주소 : kmaexam@kmamail.kr) - 메일 제목에 본인 이름, 생년월일(홍길동, 910807) 명시 ※ 파일형식(PDF, ZIP, JPG, JPEG, PNG, BMP), 파일크기 5MB 이내 ※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스캐너로 스캔하여 첨부(휴대폰 촬영본 첨부 금지) ※ 외국학적에 대한 증빙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제출 불가
오프라인	㉢ 접수 완료 페이지에서 서류봉투를 출력하거나, 봉투에 '독학학위제'를 명시하여 아래 제출처로 등기우편 발송 - 제출처: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9층 한국능력협회 독학학위제 담당자 - 서류도착기한: 10. 22.(목) 도착분까지 유효 ※ '독학학위제' 미표기 및 일반우편 발송으로 인한 서류 미도착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 부속서류는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60일 이내 발급본)를 제출**하여야 함
- **원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으로 제출**하여야 함
 - 규격(3.5cm×4.5cm), 형식(JPG, JPEG, PNG, GIF), 크기(2MB)
 - 배경이 있는 사진,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휴대폰 촬영 사진, 단체사진, 모자 착용 또는 상반신 전체 스냅 사진은 응시불가로 처리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문서관리규정에 의거 1년까지만 보존 후 파기함**)

5 수험생 유의사항

□ 시험 당일 준비물

가. 규정신분증(신분증 미 지참시 시험 응시 불가)

- 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2) 운전면허증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3) 여권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도 함께 제시
- 4) 청소년증 (만19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 대상자)
- 5) 공무원증 (장교·부사관·군무원 신분증 포함)
- 6)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 7)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 8)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에 한함)

* 모바일 신분증 사용 가능

- 정부24앱, 행정안전부앱, PASS앱, 민간개방앱(삼성윌렛, KB국민은행, 네이버, NH농협은행, 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이외 인정불가
- *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앱에서 실행한 유효한 화면을 보여야 함(캡처 등 불가)

나. 수험표 (컬러/흑백 무관)

- 1) 출력기간 : **2026. 10. 23.(금) 10:00~**
- 2) 수험표 출력 시 응시가능 여부, 시험장소, 입실시간 등 확인 가능
 - ※ 응시불가자는 수험표에서 '응시불가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응시료 환불은 없음

다. 컴퓨터용 사인펜(객관식 답안 마킹용), 흑·청색 볼펜(주관식 답안 및 인적사항 작성용)

※ 상기 필기구 외 다른 필기구(연필 등) 사용 불가

□ 유의사항

가. 반드시 수험표에 표기된 시험장 및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시험 시작 후 입실 불가 및 퇴실 후 재입실은 절대 불가**

※ 1개 과목 응시자 또는 일부 과목 응시자는 해당 교시 입실 시간에 맞추어 입실 완료하여야 함

나. 시험장 내에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다. 시험 시간 중에는 수험표와 규정 신분증을 책상 위 좌측상단에 놓아야 함

※ 수험표에 시험 문항 및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불가(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라. 답안지 하단의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야 함

마. 수험번호, 과목코드를 정확히 마킹하고, 객관식 답안을 포함한 모든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마킹하고, 주관식 답안은 흑·청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바. 마킹한 수험번호와 답안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

※ 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사. 문제지 및 답안지에도 응시자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퇴실 할 때 문제지와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시험지와 답안지는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음

아. 수험생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름

자.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의사 철회, 사고 또는 질병, 경조사 등 일체의 사유에 대한 환불 불가**

차. 시험 전에는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등)는 반드시 전원을 종료하여야 하며, 시험 중 소지하거나 사용이 불가함

※ 벨소리 등이 울린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카. 학교 시험장 교내 및 주변 50m 이내는 금연 구역임(흡연 시 과태료 부과)

6 합격 결정 및 취소

□ 합격 결정

가. **합격 결정 방법**: 원서 접수 시 '총점합격제' 또는 '과목별합격제' 중 선택

※ 합격 결정 방식은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구분	총점합격제	과목별합격제
합격기준	6과목 총점(600점)에서 60%(3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 ※ 과목별 과락 없음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 과목(6과목) 모두 60점 이상 득점
응시과목	전 과목(교양2, 전공4) 모두 필수 응시	기준에 합격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응시
유의사항	- 총점합격제를 선택하는 경우, <u>기준 합격 과목은 모두 불인정</u> 6과목 중 60점 미만의 과목이 있더라도 총 360점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	<u>기준에 합격한 과목 재응시 불가</u> ※ 원서 접수 시 선택하였더라도 응시 불가 6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60점 미만일 경우 과정 불합격

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위 수여 시 합격취소사유(13p)를 제외하고는 기타 이유로 **합격 또는 학위수여에 대한 취소 불가**

다.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과정별 합격과목 또는 면제 교육과정 이수 결과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불인정

□ 합격자 발표 및 이의 신청

가. 합격자 발표일 : 2026. 11. 30.(월) 10:00

나. 확인방법 :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 「합격조회」(공동인증/간편인증 필요)

다. 이의신청 : 2026. 11. 30.(월) ~ 12. 6.(일) (※ 기간 종료 후 신청 불가)

라. 이의신청 접수방법

- 콜센터 : 1600-0400 (평일 9:00~18:00)
-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알림마당 - 「질의 응답(Q&A)」

□ 합격 취소

가.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사람

나. 부정행위

행위 유형 \ 시험 시행·결과에 대한 영향 및 과실여부	행위를 고의로 한 경우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고 시험의 시행 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고 시험의 시행 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1.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가.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 등 원장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 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시험시간 동안 부정행위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 5)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감독관이 판단하는 행위 나. 가목 외의 부정행위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5) 부정행위 자료를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6) 수험생간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행위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및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또는 그 시험과목의 무효
2.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행위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및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비고 원장은 부정행위자등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시험에 미친 영향, 행위의 유형, 부정행위자등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증명서 발급

- 가. 지원사실확인서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내외 신청 가능
- 나. 응시사실확인서 : 시험 시행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내외 신청 가능
- 다. 성적증명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후 발급 가능(채점이의제기 절차 완료 이후)
- 라.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후 발급 가능
- 마. 학위수여 증명서 :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해 학위수여식(2월 말 예정) 이후 발급 가능

7 문의사항

- (시험 전반 문의) 독학학위제 콜센터 ☎ 1600-0400
- (응시료 결제 및 환불문의) 진학어플라이 고객센터 ☎ 1544-7715
- (그 밖의 제도문의)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질의 응답(Q&A)」